

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[별표 2]

해양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·주기(제18조제1항 관련)

대상사업	조사기간	조사주기
1.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일반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. 다만,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의 매립 대상사업으로서 매립면적이 1만5천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.	사업시작부터 사업완료까지	사업 시행 중 6개월마다 1회
2. 영 별표 2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	사업시작부터 사업완료 후 3년까지	사업 시행 중 3개월마다 1회 및 사업완료 후 6개월마다 1회

비고

-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처분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.
 - 특별한 주변 해양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협의의견의 통보 시 해양환경영향조사의 기간을 조정한 경우
 -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 대상사업의 착공으로 인한 해양환경영향이 적어 더 이상의 해양환경영향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해양이용협의 또는 해양이용영향평가 당시 예측하지 못한 해양환경영향이 발생한 경우
- 위 표의 조사기간에서 ‘사업시작’이란 해양이용·개발사업의 착공시점을 말하며, ‘사업완료’란 해당 해양이용·개발사업의 준공시점을 말한다.
- 위 표의 조사주기에서 6개월마다 또는 3개월마다의 조사시점은 사업시행 중에는 착공시점을 기준으로, 사업완료 후에는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